

휴대인터넷(WiBro)용 주파수 할당

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인터넷(WiBro)용 주파수할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년 11월 26일
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1.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: 2.5GHz대역(40MHz폭, 2575 ~ 2615MHz)

2. 할당방법 및 시기

가. 할당방법 : 전파법 제11조(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)의 규정에 따라
“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”(이하 ‘경매’라 한다.)
방법을 적용

나. 할당시기 : 기간통신사업허가 및 할당대가 납부 등 주파수 할당에
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주파수를 할당

3. 주파수할당대가 : 경매결과 최종 낙찰자가 제시한 낙찰가

4. 주파수 이용기간 :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부터 2019.3.29일까지

5.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

가. 주파수용도 : 휴대인터넷(WiBro) 서비스 제공용

나. 기술방식 : ITU에서 정한 OFDMA TDD WMAN(WiBro) 또는 그 기술에서 진화된 방식

6.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

-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자.
- 다만, IMT·휴대인터넷용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전파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, 전파법 제13조(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)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

7. 할당조건

-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인접대역 또는 인접국가와의 전파간섭 발생시 시설자간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함
- 주파수 할당 신청시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상의 망 구축계획 등 주요사항을 이행하여야 함
- 미이행시 주파수 할당 취소(전파법 제15조의2 제1항제4호) 또는 아래와 같이 이용기간 단축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

< 제재조치 >

- 중간(3년·5년) 점검결과 미이행시 : 이용기간 8개월씩 단축(할당대가 반환 없음)
- 이용기간 종료시점 점검결과 미이행시 : 재할당 거부 또는 일부대역 회수
- 자료제출(매년) 미이행시 : 이용기간 5개월씩 단축

8. 경매방법 및 절차 등

가. 경매방법 : 오름입찰방식

나. 경매절차 : 1회 이상의 입찰과정(라운드)을 거쳐 최고가입찰자가 나오고, 더 이상의 입찰이 없는 경우 경매를 종료한다. 이때 최고 입찰가를 낙찰가로, 최고가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. 그 밖의 세부사항은 붙임 “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” 참조

9. 최저경쟁가격 : 647억원

※ 할당신청법인은 전파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청한 할당대상 주파수의 대역폭에 따른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
10. 주파수할당 신청

가. 신청기간 : 2012. 11. 26 ~ 12. 26.

나. 제출서류 : ①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 신청서(별지 2호 서식), ②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할당신청법인은 주파수할당 신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 증빙서류, ③ 경매 시행일 이전까지 허가대상법인 선정 증빙서류

다. 할당대가 납부방법 및 시기 등

- (1) 납부방법 : 할당대가의 1/4을 일시 납부, 나머지는 주파수 이용기간 2년차부터 매년 균등 분할 납부

(2) 납부시기 : 일시납부금은 할당대상 선정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고,
분할납부금은 주파수 이용기간 2년차부터 매년 3월
20일까지 납부

(3) 이자 : 일시납 이후 분할납부금 종료 시점까지 납부하되, 공공
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 대출금리의 전년도 평균에서
1%를 차감하여 가산

11. 주파수할당대상법인의 선정

- 붙임 “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”에 의한 낙찰자를
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
-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“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
및 절차”에 따라 그 다음 차순위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

[붙임] 가격경쟁 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

※ 기타 : ‘가격경쟁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’를 포함한 공고내용 전문은
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(www.kcc.go.kr/알림마당/공지사항)를 참조

[붙임]

가격경쟁 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

제1장 일반사항

□ 할당신청

- 할당신청법인은 할당신청 시 할당신청서, 법인정관, 주식소유에 관한 서류, 주파수이용계획서, 보증금 납부 증거서류 및 서약서<양식1>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할당신청법인은 할당신청 시 전파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청한 주파수 대역에 따른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보증금(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 등)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- 기타 할당신청 구비서류의 작성·제출·수정 및 할당신청 적격여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」(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-15호)에 따른다.

□ 경매일정의 통보

- 방송통신위원회는 할당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할당신청법인에게 경매 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다.

□ 경매시행

- 제2장 경매방법에 따라 경매를 시행한다.

□ 할당대상법인 선정 및 통보

- 주파수가 낙찰되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낙찰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법인에게 통보한다.

□ 할당대가 납부 및 필요사항의 이행

- 할당대가 납부 및 필요서류의 제출에 관하여는 '휴대인터넷(WiBro)용 주파수 할당 공고'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「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」(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-15호)에 따른다.

□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

- 방송통신위원회는 할당대상법인이 할당대가 납부 등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법인이 납부한 보증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금으로 편입된다.
- 방송통신위원회는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된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차순위자(차가 제시자)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.
 - 이 경우, 차순위자의 입찰가가 당초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만 차순위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, 이 때 할당대가는 차순위자의 입찰가로 한다.

□ 주파수 할당

- 방송통신위원회는 할당대상법인이 할당대가 납부 등 필요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주파수할당통지서를 교부한다.

제2장 경매방법

□ 기본원칙

- 금번 경매는 2.5GHz 대역을 경매하되, 1회 이상의 입찰과정(라운드)을 거쳐 낙찰자를 정하는 “오름입찰방식”으로 한다.
- 특정 라운드에서 최고가입찰자가 되면, 그 이후 라운드부터 다른 최고가 입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입찰할 수 없다.
- 더 이상의 입찰이 없는 경우 경매를 종료하며, 이때 최고입찰가를 낙찰가로, 최고가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.
- 입찰자가 특정 라운드에서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(입찰포기로 처리되는 경우를 포함) 그 이후 라운드부터 입찰을 할 수 없다.

□ 최소입찰액

- 입찰가는 라운드별 최소입찰액 이상을 억원 단위로 제시되어야 한다.
- 최소입찰액은 각 라운드에서 입찰 가능한 최저금액을 의미하며, 라운드가 올라갈수록 증가한다.
- 1라운드의 최소입찰액은 최저경쟁가격으로 한다. 2라운드부터의 최소 입찰액은 이전 라운드 최고입찰가에 입찰증분을 더하여 결정한다.
- 입찰증분은 이전 라운드 최고입찰가의 3% 범위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.
- 최소입찰액 및 입찰증분의 금액단위는 억원이며, 그 미만의 값은 반올림한다.

□ 입찰유예

- 입찰유예는 입찰자가 특정 라운드에서 입찰가를 제시하지 않고 쉬는 행위를 의미하며, 입찰서에 입찰유예를 신청하여야 입찰유예가 인정된다.
- 입찰유예 허용횟수는 총 2회이며, 입찰유예를 연속된 라운드에 신청할 수 없다.
 - 특정 라운드에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, 해당 입찰자의 입찰유예 허용횟수 내에서 입찰유예로 처리된다.
 - 입찰자는 입찰유예를 1라운드에서 신청할 수 없다.
 - 특정 라운드에서 입찰유예를 신청한 후 그 다음 라운드에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의 입찰유예 허용횟수 내에서 입찰유예로 처리된다.

□ 입찰포기 등

- 입찰포기는 최고가입찰자가 아닌 입찰자가 더 이상 입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입찰포기로 처리된다.
 - 입찰자가 입찰서에 입찰포기를 신청하는 경우
 -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시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
 - 입찰자가 입찰유예를 라운드 연속으로 신청하는 경우
 - ※ 연속된 라운드 중 두 번째 라운드 입찰이 무효로 되어 입찰유예로 처리되는 경우는 제외
 - 입찰자가 입찰유예 허용횟수가 남아있지 않는데 입찰유예를 신청하는 경우

- 입찰자가 입찰유예 허용횟수가 남아있지 않은데 무효입찰을 한 경우
- o 입찰자가 1라운드에서 입찰을 하지 않으면 할당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.

□ 동점자 처리

- o 특정 라운드에서 최고입찰가를 제시한 입찰자가 둘 이상인 경우,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입찰자를 결정한다.

□ 라운드 진행시 고지사항

- o 방송통신위원회는 매 라운드 종료 후 최고입찰가를, 다음 라운드 시작 시 최소입찰액을 모든 입찰자에게 고지한다.

제3장 기타 준수사항 등

- o 할당신청법인(특수관계인 포함)은 할당공고 이후 경매가 종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담합 등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입찰가 등을 타 할당신청법인(특수관계인 포함)과 논의·합의하거나 공개하는 행위
 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26조에 따른 입찰 관련 담합행위
 - 고의적으로 경매진행을 방해하는 행위
- o 담합 등 부정행위를 한 법인은 「전파법」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주파수할당 취소, 보증금의 기금 수입금으로 편입 또는 2년 이내의 주파수할당 신청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.

- 입찰자의 질병·사고,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경매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경매·입찰의 연기·중단·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「전파법」, 「전파법 시행령」 및 「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」(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-15호), 「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」(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-30호)에 따른다.
- 경매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「가격경쟁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」를 일부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, 기타 경매 장소·경매진행방식 등 경매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
< 양식 1 >

담합 등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서약서

본 법인은 금번 경매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, 담합 등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기금 수입금으로 편입, 주과수할당의 취소, 과징금 및 벌금 부과, 차기 경매신청 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입찰가 등을 타 할당신청법인(특수관계인 포함)과 논의·합의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.
2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26조에 따른 입찰담합 관련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.
3. 고의적으로 경매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.
4. 할당신청 적격검토 결과 통보일부터 할당 시까지 지배구조를 변경하지 않겠습니다(권소사업 구성 법인에 한함).

2012년 월 일

법인명 :

대표자명 : (인)

방송통신위원회 귀중